

『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도 단위 이상 정부기관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는 명장, 장인, 기능인에 대하여 명칭에 구애 없이 숙련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미의 기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예우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대상 확대(안 제12조)
 - 당초 : 구미시 최고장인
 - 변경 : 지역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
-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준 신설(안 제13조)
 - 구미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
-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적용배제 조항 정비(안 제14조)
- 사무의 위탁 규정 신설(안 제18조)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숙련기술장려법」, 「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」
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교통행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「구미시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시에서 선정하는 구미시 최고장인 뿐만 아니라 도 단위 이상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선정하는 명장, 장인 등 지역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련기술자들로 예우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,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,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의 숙련기술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